##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6

발의연월일 : 2020. 11. 16.

발 의 자 : 양경숙 · 민형배 · 윤재갑

김승원 · 남인순 · 강훈식

임호선 · 최종윤 · 이탄희

이장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증권거래세를 원활하게 과세하도록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는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래징수 제도를 두고 있고, 거래징수 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 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권의 종목·수량"을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거래징수) ① (생 략)	제9조(거래징수) ① (현행과 같
	승)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2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	
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	
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u>주권의 종목·수량</u>	<u>양도 건별 주권의</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
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	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u>수 있는 정보</u>